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1. 11. 1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CJ삼구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 광고2254)	(주)CJ삼구쇼핑은 2001. 7. 9. 오후 8시부터 8시 40분경 까지 방송된 에어컨 판매광고 과정에서 자막을 통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 흡쇼핑 제품은 2000년 모델, 삼성에어컨은 2001년 신모델”이라고 표현, 마치 경쟁사업자는 전년도 재고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4호 위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1. 11. 1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유림종합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 부사2275)	유림종합건설(주)는 1999. 6. 23자 부산일보에 자신이 시공 분양하는 “거제유림아시아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마지막 세금혜택 임박!”, “양도세 전액면제(전평형 해당)+취득세 50%~25% 감면” 등과 같이 마치 모든 분양계약자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1호 위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1. 11. 2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신공영(주)[한신코아대전점]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1전사 2084)	한신공영(주)[한신코아대전점]는 브랜드별 구매고객에 대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면서 285개의 특정매입 입점업체 중 1차 행사시에는 271개의 입점업체, 2차 행사시에는 270개의 입점업체를 참여시켜 브랜드별로 5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각티슈 3개, 7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5천원상품권 1매, 1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1만원상품권 1매, 3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2만원상품권 1매를 각각 지급하였고, 동 행사와 관련하여 1차 행사시에는 백화	특정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전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점 내부품을 거치지 않고 행사비용 100%를 참여입점업체에게 부담시켰고, 2차 행사시에는 행사 이틀 전에 내부품을 거쳐 행사비용 50%를 참여입점업체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으며, 특정매입 입점업체와 거래하면서 입점업체 303개중 53개 업체에 대하여는 약정서에 거래형태, 거래기간, 판촉사원 파견여부 및 광고비 등의 비용분담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채 거래하고 있었으며, 68개 입점업체에 대하여는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거래상지위의남용) 및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와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	

2001. 11. 2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엠닷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광고 2101)	(주)엠닷컴은 2001.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일경제 등을 통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쇼핑몰 "세파월드"를 분양광고 하면서 "한국토지신탁이 자금관리책임으로 투자시 안정성 100% 확보", "실투자금액 2,000만 원대로 년 500~700만원대의 임대수익" 이라고 표현,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회원사에 알려드립니다**

● **회원사 2002년도 공정거래 관련 업무계획**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각 회원사의 2002년도 공정거래 관련 업무계획이나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1월 10일까지 본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2  
FAX: (02)775-8873